

##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74
----------	------

제출연월일: 2020. 11. 6.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정이유

- 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지원계획을 수립·정책실현
- 나.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생활편의 및 복지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안 제4조 ~ 안 제5조)
- 다. 실태조사 (안 제6조)
- 라. 지원사업 (안 제7조)
- 마. 사무의 위탁 (안 제8조)
- 바. 포상 (안 제9조)

### 3. 근거법규

-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제2의2호
- 나.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제2항제10호

### 4.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11885(2020. 10. 9.)]

라. 입법예고: 2020. 10. 5. ~ 10. 26.(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 제안
4.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거법규

###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3. 작성자

- 소 속: 주민생활지원과
- 직 급: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이 름: 권은정
- 연락처: (052)290-4492